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22년 3월)

2022. 4.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목 차

I.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1
II.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3
(붙임1) 한국산 식품 부적합 내역(2022년 3월 발표)	8
(붙임2)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2022년 3월 누적)	10

본 자료는 산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국 규제 정보 조사·제공>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 정부(5개국)가 발표하는 수입식품 검사결과 중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월 1회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각 관련 기준 등은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이후 개정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해당 사이트 URL 연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석 대상 기간 : 2022년 3월 1일 ~ 31일 (정보발표일 기준)

◇ 자료 출처 : 중국(해관총서), 대만(TFDA), 일본(후생노동성), 미국(FDA), 유럽연합(RASFF)

※ 상기 5개국의 주요 법령 및 기준규격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02-744-3968)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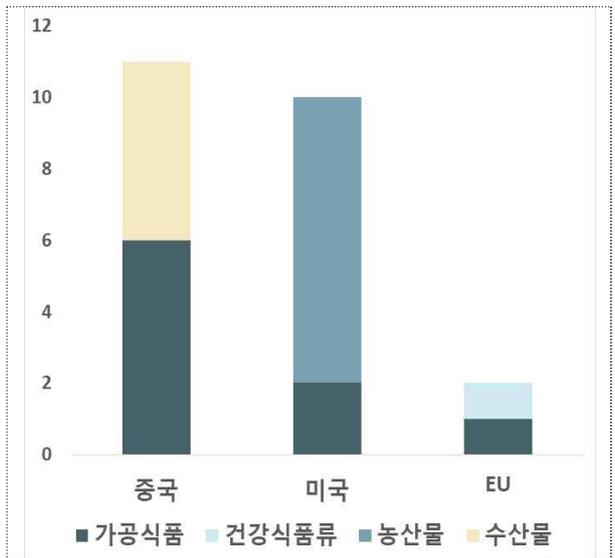
'22년 3월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총 23건 발표, '22년 2월 24건 대비 4% 감소함.

* 전년 동기('21년 3월, 7건) 대비 229% 증가

- ▶ (식품별) 가공식품(9건), 농산물(8건), 수산물(5건), 건강식품류(1건) 순이었음. 중국에서 가공식품 6건, 수산물 5건이 발표되었고, 미국에서 농산물 8건, 건강식품류 2건이 발표됨. 이어 유럽연합에서 가공식품 1건, 건강식품류 1건이 발표됨.
- ▶ (원인별) 식품첨가물(25건)이 가장 많았고, 서류 관련 기타 부적합(9건), 표시기준 위반(8건), 유해물질 함유(6건), 미생물(2건), 잔류농약(1건) 순이었음. 식품첨가물 부적합 원인은 모두 중국에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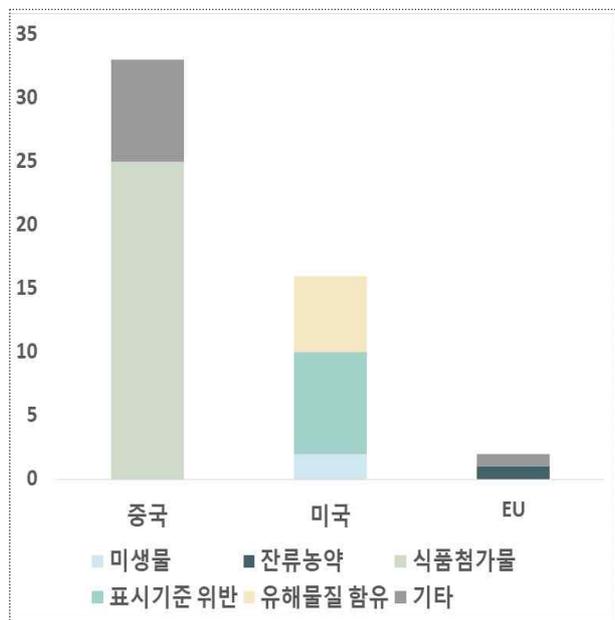
□ 식품별 현황 : 3개국 총 23건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가공식품	6	-	-	2	1	9
건강식품류	-	-	-	-	1	1
농산물	-	-	-	8	-	8
수산물	5	-	-	-	-	5
기구용기포장	-	-	-	-	-	0
기타	-	-	-	-	-	0
합계	11	0	0	10	2	23



□ 원인별 현황 : 3개국 총 51건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미생물	-	-	-	2	-	2
잔류농약	-	-	-	-	1	1
식품첨가물	25	-	-	-	-	25
중금속	-	-	-	-	-	0
표시기준 위반	-	-	-	8	-	8
비위생적 처리	-	-	-	-	-	0
유해물질 함유	-	-	-	6	-	6
기타 ¹⁾	8	-	-	-	1	9
합계 ²⁾	33	0	0	16	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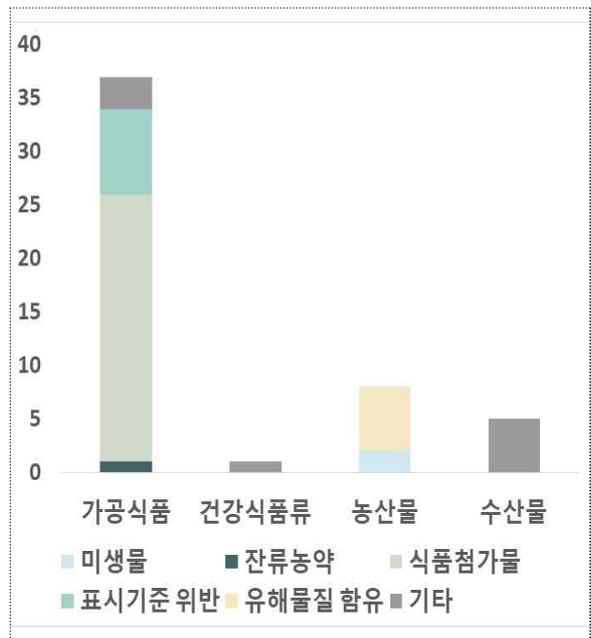


*1) 화물증서 부적합, 구비서류 혹은 합격증 서류 미제공

*2)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하여 식품별 현황 건수(23건)와 차이

□ 식품별 원인 현황

구분	가공식품	건강식품류	농산물	수산물	가공포장	기타	합계
미생물	-	-	2	-	-	-	2
잔류농약	1	-	-	-	-	-	1
식품첨가물	25	-	-	-	-	-	25
중금속	-	-	-	-	-	-	0
표시기준 위반	8	-	-	-	-	-	8
비위생적 처리	-	-	-	-	-	-	0
유해물질 함유	-	-	6	-	-	-	6
기타	3	1	-	5	-	-	9
합계	37	1	8	5	0	0	51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 사례1

○ 부적합 식품 상세 정보

- 對수출국 : 중국
- 제품유형 : 옥수수시리얼(玉米片) (3건)
- 부적합 사유 : 다수 영양강화제*의 사용범위 초과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비타민B₆, 비타민C, 비타민D₃, 니코틴산아미드, 엽산, 인산칼슘, 산화아연¹⁾

< 특 이 사 항 >

'22년 1분기,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식품 51건 중 10건(약 20%)이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으로 통관 거부되었으므로, 수출 시 수출대상국에서 적용되는 식품 유형과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처리조치 : 반송/폐기
- 발표시기 : 2022년 3월

○ (관련 기준1) 시리얼류의 '니코틴산아미드' 기준·규격

구분	니코틴산아미드(Nicotinamide)
한국	(사용기준) 니코틴산아미드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육 2. 선어패류(신선한 어패류를 말한다) (주용도) 영양강화제 ※(참고) 시리얼류에 대한 사용량을 규정하지 않음
중국	영양강화제 용도: '나이아신(니코틴산)'의 화합물공급원에 해당하며, '즉석섭취 곡물,オート밀(시리얼) 포함 제품' 중 '나이아신(니코틴산)' 사용량은 75~218 mg/kg 임 ※(참고) 'GB 14880-2012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에 따르면, 식품 중 영양 강화제의 사용범위, 사용량은 부록A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용이 허용된 화합물공급원은 부록B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대만	영양첨가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일일섭취량 또는 300 g당(일일 섭취량 미표시인 경우) 나이아신 총 함량 25.5 mg N.E 이하로 사용해야 함 ※(참고) 캡슐 및 정 형태이면서 일일 섭취 제한량을 표시하는 식품, 영아 (보조)식품은 별도 사용량을 규정함

1) 기제공 부적합 영양강화제 기준규격 참고: <20년 11차> 중국의 시리얼류 영양강화제 엽산, 비타민D 사용범위 위반; <19년 10차> 중국의 복합조미료 식품첨가물 비타민B₁라우릴황산염(Thiamine Dilaurylsulfate) 사용범위 위반; <17년 1차> 중국의 캔디류 비타민B₁, 비타민B₂, 비타민B₆, 비타민D, 비타민E, 엽산 사용범위 위반

일본	<p>사용 가능하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참고) 식육, 선어패류(고래고기 포함)에 사용 불가</p>
미국	<p>인체 영양 및 대사 과정에 필요한 영양 성분으로,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사용 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GRAS) 물질임</p>
EU	<p>식품에 첨가 가능한 비타민 중 나이아신 급원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소/최대량을 정하고 있지 않음</p> <p>※(참고1) 유럽연합은 식품에 첨가되는 비타민·미네랄·특정 기타 물질에 관한 규정(EC) 1925/2006 제9조에 따라 해당 물질들에 관한 회원국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등록부(Community Register)를 작성 및 관리하며, 영국의 경우 니코틴산(Nicotinic acid) 또는 니코틴산아미드(Nicotinamide)는 영국 ‘The Bread and Flour Regulations 1998’에 따라 전립소맥분(wholemeal flour)을 제외한 곡물분(flour)에 사용 가능함</p> <p>※(참고2) ‘영유아용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이유식에 관한 지침 2006/125/EC’에 따르면, ‘유아용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유아식’에 영양 강화제로 100 kcal당 4.5 mg NE 이하로 사용 가능함</p> <p>(*) ▲우유 또는 기타 적절한 영양가 있는 액체로 재구성되거나 재구성되어야 하는 단순 곡물 ▲물 또는 단백질이 없는 기타 액체로 재구성되거나 재구성되어야 하는 고단백식품이 첨가된 곡물 ▲끓는 물 또는 기타 적절한 액체로 조리 후 사용하는 파스타 ▲직접 사용하거나 분쇄 후 물, 우유, 기타 적절한 액체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러스크 및 비스킷</p>

(중국) GB 14880-2012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²⁾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³⁾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⁴⁾

(미국) 연방규정집 제21편 184.1535 나이아신아미드⁵⁾

(EU) 식품에 첨가되는 비타민·미네랄·특정 기타 물질에 관한 규정(EC) 1925/2006⁶⁾

영유아용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이유식에 관한 지침 2006/125/EC⁷⁾

(참고) 영국 The Bread and Flour Regulations 1998⁸⁾

2)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검색플랫폼(<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002D3B53-DE13-42C1-B099-C57EC501138A>)
 3) 대만 식품약물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Detail.aspx?nodeID=521&id=190>)
 4)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ld=78334000&dataType=0&pageNo=1)
 5)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21편 184.1535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84/subpart-B/section-184.1535>)
 6) 유럽연합 규정 1925/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6R1925>)
 7) 유럽연합 지침 2006/125/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6L0125>)
 8) 영국 The Bread and Flour Regulations 1998 (<https://www.legislation.gov.uk/ukxi/1998/141/contents/made>)

○ (관련 기준2) 시리얼류의 '엽산' 기준·규격

구분	엽산(Folic Acid)
한국	(사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 (주용도) 영양강화제
중국	영양강화제 용도: '즉석섭취 곡물, 오토밀(시리얼) 포함 제품' 중 사용량은 1,000 ~ 2,500 µg/kg 임 ※(참고) 'GB 14880-2012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에 따르면, 식품 중 영양 강화제의 사용범위, 사용량은 부록A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대만	영양첨가제 용도: 일일섭취량 또는 300 g당(일일섭취량 미표시인 경우) 엽산 총 함량 600 µg 이하로 사용해야 함 ※(참고) 캡슐 및 정 형태이면서 일일 섭취 제한량을 표시하는 식품, 영아(보조)식품은 별도 사용량을 규정함
일본	대상외물질'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 대상 식품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물질
미국	영양성분으로 사용 가능하며, '아침식사용 시리얼' 중 제공량 당 400 µg을 초과하지 않도록 첨가할 수 있음
EU	식품에 첨가 가능한 비타민 중 엽산으로 사용가능하며 최소/최대량을 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 '영유아용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이유식에 관한 지침 2006/125/EC'에 따르면, '영유아용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유아식'에 영양강화제로 100 kcal 당 50 µg 이하로 사용 가능함

(중국) GB 14880-2012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⁹⁾

(대만)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 규격표준¹⁰⁾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¹¹⁾

(미국) 연방규정집 제21편 172.345 엽산¹²⁾

(EU) 식품에 첨가되는 비타민·미네랄·특정 기타 물질에 관한 규정(EC) 1925/2006¹³⁾,
영유아용 곡물 기반 가공식품 및 이유식에 관한 지침 2006/125/EC¹⁴⁾

9)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검색플랫폼(<https://sppt.cfsa.net.cn:8086/db?type=2&guid=002D3B53-DE13-42C1-B099-C57EC501138A>)

10) 대만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FoodAdditivesListDetail.aspx?nodeID=521&id=832>)

11) 일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334000&dataType=0&pageNo=1)

12)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21편 172.345(<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B/part-172/subpart-D/section-172.345>)

13) 유럽연합 규정 1925/200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6R1925>)

14) 유럽연합 지침 2006/125/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6L0125>)

□ 사례2

○ 부적합 식품 상세 정보

- 對수출국 : 미국
- 제품유형 : 젤 컵 캔디(GEL CUPS CANDY) (2건)
- 부적합 사유 : 표시기준 위반 (①가독성 ②라벨 미표시 ③수량정보 누락 ④성분 미표시)

< 특 이 사 항 >

국가별 표시기준(성분 표시, 표시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수출 전 관련 규정 확인 및 표시 내용 검토 필요

- 처리조치 : 통관거부
- 발표시기 : 2022년 3월

○ (관련 기준) 미국의 식품표시 관련 규정(주요 내용)

관련 규정
<p>[일반식품, 식이보충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규정 (21 CFR 101) 식품 표시¹⁵⁾- 2004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¹⁶⁾
<p>[가공식품의 주요 표시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표시면) 주표시면은 디자인, 삽화(vignettes)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밀집되지 않아야 하고 표지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는 모든 필수 정보가 담길 수 있게 충분해야 함 (21CFR101.1)- (정보표시면) 주표시면에 인접한 우측에 자리하는 면으로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있어야 하는 모든 정보는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별도의 면제 경우를 제외하고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의 문자 및/또는 숫자의 높이는 1/16인치 미만일 수 없음 (21CFR101.2)- (포장 형태 식품의 식품명 표시) 식품명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통상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 식품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 (21CFR101.3)- (원료 표시) 101.100항의 면제 대상 원료를 제외하고, 101.2항의 규정에 따라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일반적 또는 통상적 명칭을 중량 내림 순으로 기재 (21CFR101.4)- (제조, 포장, 유통업소명 및 소재지) 포장 형태의 식품 표지는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업소명과 주소를 눈에 잘 띄게 명시해야 함. 표시 업체명(또는 사람)이 실제 제조사가 아닌 경우, 그 이름은 “_을 위해 제조”, “_에 의해 유통”, 또는 사실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 등 식품과 표시 대상의 관계 사실이 드러나도록 표시해야 함. 사업장 소재지는 주 (state), 도시(city), 거리(street) 주소, 우편번호로 표시하되 현재 도시 주소록(city directory)이나 전화번호부에 소재지가 있으면 거리 주소는 생략 가능 (21CFR101.5)- (내용량) 주표시면의 하단 30% 이내에 용기 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중량, 치수, 숫자 또는 그 조합으로 표시 (중량(weight, wt), 온스(ounce, oz), 파운드(pound, lb) 등 특정 단위 사용) (21CFR101.7)

관련 규정

- (영양성분표) 열량, 총지방(이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이하 식이섬유, 총 당류(sugars), 첨가당(added sugars),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비타민D, 칼슘, 철, 칼륨) 항목 표시 (21CFR101.9)
-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 8개 품목(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성분 및 여기에서 유래하는 단백질 함유 원료 의무 표시
- (특정 영양성분표시) 식이보충제의 특정 영양성분 표시 요건은 연방규정(21CFR101)의 Subpart C-특정 영양성분 표시 요건 및 지침 조항 참조
- (강조표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및 건강 강조표시 요건은 연방규정(21CFR101)의 아래 조항 참조
 - ① Subpart D-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에 관한 상세 요건, ② Subpart E-건강 강조표시에 관한 상세 요건

15) 미국 연방규정(21 CFR 101 식품표시)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e7beef0b711318e426f2cb948ce211b3&mc=true&node=pt21.2.101&rgn=div5>)

16) 미국 2004 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https://www.fda.gov/food/food-allergensgluten-free-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food-allergen-labeling-and-consumer-protection-act-2004-falcpa>)

국가	발표시기	제품유형	부적합 사유	처리조치
중국	2022.3. (22년 2월 부적합)	김밥용 김 (包飯用海苔)	기타 (요구에 따른 증서 혹은 합격증 서류 미제출)	통관거부
		조미김 (調味海苔)	기타 (요구에 따른 증서 혹은 합격증 서류 미제출)	
		냉동 갈치 (凍帶魚)	기타 (화물증서 부적합)	
		냉동 삼치 (凍藍點馬鮫魚)	기타 (화물증서 부적합)	
		신선 넙치 (冰鮮牙鰱魚)	기타 (화물증서 부적합)	
		신선 도다리 (冰鮮木叶鰈)	기타 (화물증서 부적합)	
		신선 돌가자미 (冰鮮石鰈魚)	기타 (화물증서 부적합)	
		부침튀김가루 (煎炸粉)	기타 (요구에 따른 증서 혹은 합격증 서류 미제출)	
		옥수수시리얼 (玉米片)	식품첨가물 (①비타민C ②니코틴산아미드 ③비타민B ₆ ④비타민D ₃ ⑤비타민B ₁ ⑥비타민B ₂ ⑦엽산 ⑧인산칼슘 사용범위 초과)	
		옥수수시리얼 (玉米片)	식품첨가물 (①비타민C ②니코틴산아미드 ③비타민B ₆ ④비타민D ₃ ⑤비타민B ₁ ⑥비타민B ₂ ⑦엽산 ⑧인산칼슘 ⑨산화아연 사용범위 초과)	
옥수수시리얼 (玉米片)	식품첨가물 (①비타민C ②니코틴산아미드 ③비타민B ₆ ④비타민D ₃ ⑤비타민B ₁ ⑥비타민B ₂ ⑦엽산 ⑧인산칼슘 사용범위 초과)			

미국	2022.3. (2022년 2월 부적합)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유해물질 함유	통관거부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유해물질 함유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유해물질 함유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유해물질 함유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유해물질 함유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유해물질 함유	
		젤 컵 캔디 (GEL CUPS CANDY)	표시기준 위반 (①가독성 ②라벨 미표시 ③수량정보누락 ④성분 미표시)	
		젤 컵 캔디 (GEL CUPS CANDY)	표시기준 위반 (①가독성 ②라벨 미표시 ③수량정보누락 ④성분 미표시)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미생물 (리스테리아 함유)	
		팽이버섯 (ENOKITAKE MUSHROOMS, WHOLE (BUTTON)(FUNGI))	미생물 (리스테리아 함유)	
EU	2022.3.	식이보충제 (food supplement)	기타 (서류 부적합)	위탁자 반송
		면류 (instant noodles)	잔류농약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공식 역류

붙임2

한국산 식품 부적합 현황 (2022년 1~3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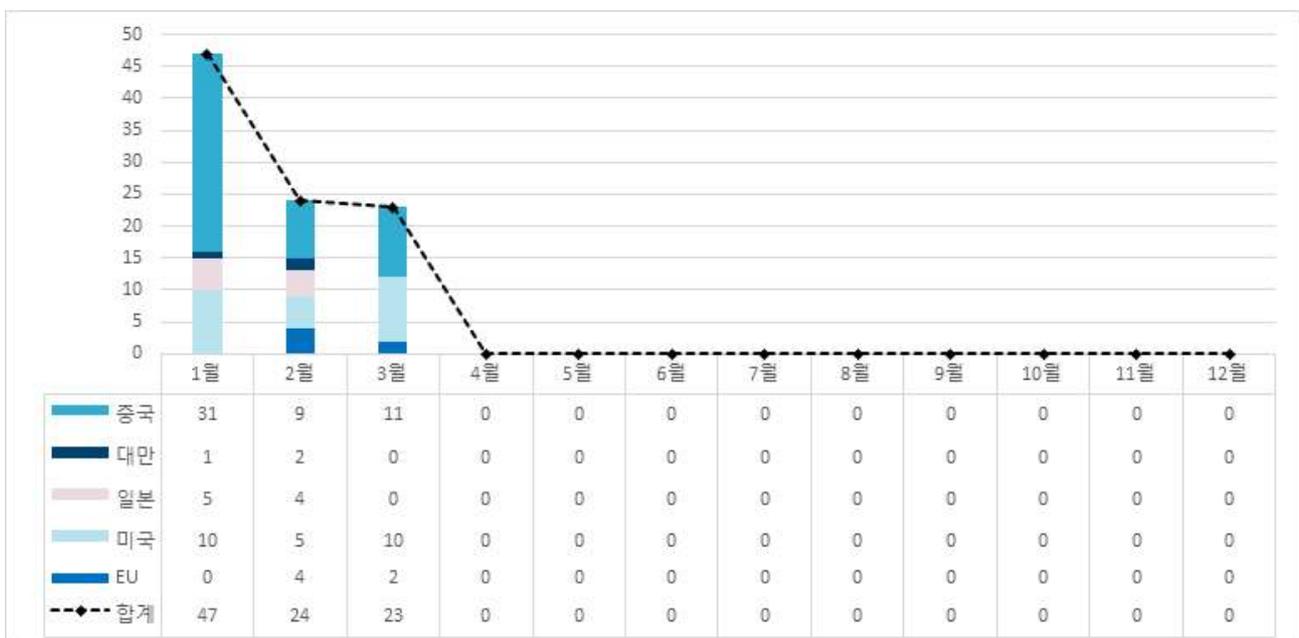
□ 식품별 현황 (1~3월 발표)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가공식품	42	1	7	3	4	57
건강식품류	-	-	-	7	1	8
농산물	-	2	-	15	-	17
수산물	8	-	1	-	1	10
기구용기포장	-	-	-	-	-	0
기타	1	-	1	-	-	2
합계	51	3	9	25	6	94

□ 원인별 현황 (1~3월 발표)

구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합계
미생물	6	-	8	7	-	17
잔류농약	-	4	-	1	4	5
식품첨가물	36	1	1	-	-	12
중금속	-	-	-	-	-	0
표시기준위반	20	-	-	32	-	44
비위생적 처리	-	-	-	-	-	0
유해물질 함유	-	-	-	6	-	0
기타	17	-	1	1	2	10
합계	78	5	10	47	6	146

* 식품 1건당 부적합 원인 항목이 복수인 경우 이를 개별 집계



[그림] 월별 주요국 부적합 식품 현황(건수)

□ 국가별 현황 (1~3월 발표) (*원인요소 기준)

국가	구분	가공식품	건강식품류	농산물	수산물	기구용기포장	기타	합계
중국	미생물	5	-	-	-	-	-	5
	잔류농약	-	-	-	-	-	-	0
	식품첨가물	34	-	-	2	-	-	36
	중금속	-	-	-	-	-	-	0
	표시기준 위반	19	-	-	-	-	1	20
	유해물질 함유	-	-	-	-	-	-	0
	기타	11	-	-	6	-	-	17
합계	69	0	0	8	0	1	78	
대만	미생물	-	-	-	-	-	-	0
	잔류농약	-	-	4	-	-	-	4
	식품첨가물	1	-	-	-	-	-	1
	중금속	-	-	-	-	-	-	0
	표시기준 위반	-	-	-	-	-	-	0
	유해물질 함유	-	-	-	-	-	-	0
	합계	1	0	4	0	0	0	5
일본	미생물	7	-	-	1	-	-	8
	잔류농약	-	-	-	-	-	-	0
	식품첨가물	1	-	-	-	-	-	1
	중금속	-	-	-	-	-	-	0
	품질규격	-	-	-	-	-	-	0
	유해물질 함유	-	-	-	-	-	-	0
	기타	-	-	-	-	-	1	1
합계	8	0	0	1	0	1	10	
미국	미생물	-	-	7	-	-	-	7
	잔류농약	-	-	1	-	-	-	1
	식품첨가물	-	-	-	-	-	-	0
	중금속	-	-	-	-	-	-	0
	표시기준 위반	13	16	3	-	-	-	32
	비위생적 처리	-	-	-	-	-	-	0
	유해물질 함유	-	-	6	-	-	-	6
기타	-	-	1	-	-	-	1	
합계	13	16	18	0	0	0	47	
EU	잔류농약	4	-	-	-	-	-	4
	표시기준 위반	-	-	-	-	-	-	0
	식품첨가물	-	-	-	-	-	-	0
	중금속	-	-	-	-	-	-	0
	기타	-	1	-	1	-	-	2
합계	4	1	0	1	0	0	6	